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13호 2011. 1. 11(화)

◀ 조 려 ▶

-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29호) 2
-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030호) 6
-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31호) 11
-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32호) 18
-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33호) 20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34호) 27

◀ 규 칙 ▶

-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41호) 48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42호) 52

◀ 훈 령 ▶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제233호) 63

◀ 공 고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제2011-16호) 82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제2011-17호) 85
-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지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제2011-18호) 86
- 포항시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재공고(제2011-15호) 87

회								
람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 1029호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세대”를 “46세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 당 공급관 총공사비의 부담비율을 별표와 같이 하되, 지원액은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46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46세대에 미달할 경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는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단독 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 ----- ----- 46세대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총공사비의 부담비율을 별표와 같이 하되, 지원액은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생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 -----46세대를 기준 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46세대에 미달할 경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0세대 미달인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총공사비 부담비율	(삭제)																							
<table><tr><th rowspan="2">신청 세대</th><th colspan="3">부 담 비 율 (%)</th></tr><tr><th>사업자</th><th>포항시</th><th>소비자</th></tr><tr><td>29~25세대</td><td>40</td><td>30</td><td>30</td></tr><tr><td>24~20세대</td><td>30</td><td>35</td><td>35</td></tr><tr><td>19~15세대</td><td>20</td><td>40</td><td>40</td></tr><tr><td>14~10세대</td><td>10</td><td>45</td><td>45</td></tr></table>	신청 세대	부 담 비 율 (%)			사업자	포항시	소비자	29~25세대	40	30	30	24~20세대	30	35	35	19~15세대	20	40	40	14~10세대	10	45	45	
신청 세대		부 담 비 율 (%)																						
	사업자	포항시	소비자																					
29~25세대	40	30	30																					
24~20세대	30	35	35																					
19~15세대	20	40	40																					
14~10세대	10	45	45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10.8.1)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경제성 충족세대가 100m당 30세대에서 100m당 46세대로 상향 조정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정해짐에 따라 기존 조례의 보조금 지급대상(10~29세대)을 변경된 공급규정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10~45세대)까지 확대적용하고,
- 최고 보조금액을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46세대를 기준으로 사용신청자의 수가 46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고 150만원으로 한다.(안 제 6조제1항)
- 나. 【별표】는 삭제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 1030호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함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함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함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함

제3조(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①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단체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청구서는 즉시 처리부서로 배부한다.

제6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배분, 처리현황 관리

2. 사전 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직원 대상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해촉 업무

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법 제1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제7조의 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제7조와 제8조의 방법으로 공개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진행 및 보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 및 회의록 작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행정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정보공개대상기관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역점시책
2. 예산·결산, 기금운용 및 채무관리 계획
3.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인구, 주택, 차량, 쓰레기 발생량, 산업 통계 등)
4. 경제동향 및 소비자 물가 정보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6.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7. 정보공개대상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8. 시보 및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②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가 시행하는 공사 및 구매·용역의 입찰계약 내역 및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
3.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 내용
4.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5.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
6.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정기적·수시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공개) 공개대상기관에서는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하여 시청 및 구청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심의회의 명칭은 포항시정보공개심의회와 포항시 남·북구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 ③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명은 공무원으로, 4명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시 심의회의 경우 부시장이고, 구 심의회의 경우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공무원인 위원은 시 심의회의 경우 본부장, 국장 중에서 구 심의회의 경우 각 과장이나 읍·면·동장 중에서 각 기관장이 임명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3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심의안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시의 심의회는 본청 및 사업소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의 심의회는 구청 및 관할 읍·면·동, 출장소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간사 등)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1. 시 심의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구 심의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2.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조서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비율 등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집행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표방법 및 처리부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 1031호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함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함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함
5. “자전거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함
6.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

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함

7.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함
8. “분리대”라 함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함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시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시민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문화를 홍보할 의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다.
2.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 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제1항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 대여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노외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우선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원,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대여소를 우선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주차장,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① 시장은 민간투자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준하여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이용료는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요금을 정하고, 요금변경 시에도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및 점·사용료의 면제 등 다양한 방법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주주로서 사업시행 및 운영자로 참여해야 한다.

⑤ 점·사용료 일부면제의 범위와 예산지원 시 그 범위를 확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과 인프라 및 문화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전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포항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 한다.

제19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

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소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기본시책 강구(안 제4조)

나. 법 제5조에서 규정한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타 부서의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우리시의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다.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안 제19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 1032호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u>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포항시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 1033호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점용료등은”을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당해년도 3월내에”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와 토석”을 “다만, 토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 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에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2/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1/3 ※ 월 10,000 m^3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에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시지가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모래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② 회계연도..... 해당연도..... ③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당연도.....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1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 회계연도..... 해당연도 3월 말 까지.....

현행	개정
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 납기에 따른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 한다. ② (생략)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등(부당이득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그 밖의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현행	개정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와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퍼센트 이상 해당연도.....다만, 토석·.....

1. 개정이유

-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 하천 점·사용료 고액납부자에 대한 분할 납부 규정을 두어 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작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1/100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별표1)
- 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규정 마련 (안 제4조제2항)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 1034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1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 본문 중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 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로공사 등 공익상” 을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부담시켜야 한다” 를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건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다만, 하수종말처리 구역 이외의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2월” 을 “2개월”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월” 을 “3개월”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

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 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 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7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와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4호”를 “제13호”로 하며, “년”을 “연”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부모, 존속가족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16호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제7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 17.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별표 1과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처음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포항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료 율		비 고
	사용단계(㎥/월)	㎥당 단가(원)	
가정용	1~20	129	
	21~30	193	
	31 이상	257	
일반용	1~100	253	
	101~300	379	
	301 이상	506	
대중탕용	1~1000	152	
	1001~2000	379	
	2001 이상	455	
전용공업용	단일종량제	181	

주)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1-1】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구분 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 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가정용, 담배소매업, 부동산중개소, 연탄소매업,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일반 행정), 소매점(5평 미만), 문방구(5평 미만), 사무소(4인 이하), 도장방, 만화가게, 양곡소매업,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원호단체, 경로당, 그 외 주된 용도가 가사용인 것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대중수영장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급수관에 의한 급수

주)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타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m³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m³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함 4. ~ 7. (생략)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시설을 설치 완료 하고 공공하수도를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	개정안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일 이내에 <u>시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u>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u>기타의</u>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의 준설 등) ① (생략)	<u>포항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1.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u>그 밖의</u> 제6조(하수관거의 준설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 하지 아니할 때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 ①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2.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	개정안
에는 규칙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설>	 「건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제12조(사용료) ①..... <삭제> ②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 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⑤ <신설> <신설>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2개월..... 2개월..... 2개월..... ④..... 3개월.....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

현행	개정안
〈신설〉	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점용료) ① (생략)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 ⑤ (생략)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② (생략)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 질수치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산정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1개월.....1개월.....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21조(분뇨수집·운반업) ① ~ ② (생략) ③ 시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와 정화조오니의 발생량을 고려 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생략) ④ (생략) 1. ~ 2. (생략) 3.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4호 까지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건분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 제21조(분뇨수집·운반업) ① ~ ② (생략) ③그 밖에 제22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13 호..... 연

현행	개정안
4. 기타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 ⑦ (생략)	4. <u>그 밖에</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면 등) ① (생략) 1. ~ 5. (생략) 〈<u>신설</u>〉	제27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한부모, 존속가족</u>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u>60일</u>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8조(이의신청) ①<u>90일</u>..... ②<u>90일</u>.....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 ① (생략) ② 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u>제47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u>제48조</u>.....
제33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33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 15. (생략) 〈신설〉 〈신설〉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7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17.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금표(제12조제2항 관련) □ 하수도처리구역 내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포항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 요금(원)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가정용	200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이상	54 89 102 114 141 191	가정용	1 - 20 21 - 30 31 이상	129 193 257
업무용	200	1 - 20 21 - 50 51 - 100 101-300 301이상	78 126 141 157 173	일반용	1 - 100 101-300 301 이상	253 379 506
영업용	200	1 - 30 31 - 50 51 -100 101 - 500 501이상	90 222 370 518 740			
대중탕용	200	1 - 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118 251 265 281	대중탕용	1-1000 1001-2000 2001 이상	152 379 455
산업용	200	단일종량	157	전용공업용	단일종량	181

□ 하수처리구역 외(읍·면지역 제외) : (표) <삭제>

현행	개정안
주)하수처리구역 내·외의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주) <삭제>----- ----- -----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하수도 사용 업종별구분표(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1-1〕 하수도 사용 업종별구분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구분 내용	구 분	구분 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 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 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가정용, 담배소매업, 부동산중개소, 연탄소매업,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일반 행정), 소매점(5평 미만), 문방구(5평 미만), 사무소(4인 이하), 도장방, 만화가게, 양곡소매업,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원호단체, 경로당, 그 외 주된 용도가 가사용인 것
영업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직영하는 사업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임협,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 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 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구분 내용	구 분	구분 내용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 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도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 의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 에 대한 급수 제외)	일반용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구분 내용	구 분	구분 내용
영업용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금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 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요금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일반용	
대중탕용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대중수영장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급수관에 의한 급수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주)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타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1. 개정이유

-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톤당 판매단가는 144.8원인데 비하여, 톤당 처리원가는 974.9원으로 424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현실화율(14.8% → 22.3%)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취지에 맞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인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인상율을 49.8%로 조정하여 톤당 판매단가를 217원으로 책정함.
- ※ 상수도사업소의 수도사용료(요금)현실화율은 73.6%임.

2. 주요내용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현실화율을 22.3% 수준으로 책정하여 톤당 평균 부과단가를 217원으로 조정 하고, 하수도 사용업종을 상수도업종에 준하여 개정함.

○ 업종별 요금조정 내역

(49.8%인상)

(단위 : 원, %)

업종별	1톤당 평균단가(원/톤)		평 균 인상금액(원)	인상률 (%)
	인상 전 (2009년 결산기준)	인상 후 (2010년 부과후 기준)		
가정용	101.43	136.0	34.57	34.65
업무용	130.38	350.0	219.62	169
영업용	310.33		39.67	12.90
대중탕용	240.96	325.0	84.04	35.41
산업용	133.40	181.0	47.60	36.0
평 균	144.77	217	72.23원	49.8%
현실화율	14.85%	22.3%		

- 상위 법규의 인용조문 불부합 부분 개정

규 칙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규칙 제 541호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 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재택 당직자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1) 중 “15인”을 “15명”으로, “14인이하”를 “14명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15인 이상”은 “15명 이상”으로 “14인이하”는 “14명 이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인 1조이상” 을 “2명 1조 이상” 으로 하며, “매 시간마다” 를 “시간마다”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의 일부라 함은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말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재택 당직자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략)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시 추가인원을 편승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1) 사업소 당직근무 대상인원 15인 이상은 당직원 1명, 14인 이하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 2) ~ 3) (생략) 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당직근무 대상인원 15인이상은 당직원 2명, 14인이하는 당직원 1명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사업소 ----- 15명- ----- 14명 이하----- 2) ~ 3) (현행과 같음) 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15명 이상----- --- 14명 이하-----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비상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 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8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 ----- 2명 1조 이상 ----- 시간마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생략)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 유 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 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명 -----

1. 개정이유

숙직근무자의 전일휴무를 보장함으로써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당직 근
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반일 휴무에서 전일 휴무로 개정

* 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의 휴무	현행	변경
	반일 휴무 (오전 또는 오후)	전일 휴무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규칙 제 542호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을 “10일”로 하고,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증명서(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64조 규정에 의거”를 “법 제13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 년 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주요목적사업
---	--	-------------------

붙임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서식 목차

포 항 시 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

※ 작성후 보낼 곳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100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세무지도) 우편번호 : 790-722

※ 문의사항 전화 : (054) 270-2492, 2493 fax (054) 270-249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 [토지·건물·용자·시설물(건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비·수수료 등
단) 주택건설판매 법인은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목차

1. 법인현황<삭제 2008.10.21>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삭제 2008.10.21>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5.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 년도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단위 : 원)

사업 소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b)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 여부 기재
-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종업원 명세서

<사업소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①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②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③=(①-②)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③)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 ----- ----- ----- -----
제2조(정의) (생략) 1. “세무조사”라 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죄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 7.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 ----- ----- ----- ----- -----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 10일-----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 -----

현행	개정안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의 개시 등)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현행과 같음) 1. 법 제73조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시장은 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조사공무원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 법 제136조에 따라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규정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을 변경함

훈 령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훈령 제 233호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보조금 지원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 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함(중간검사, 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

2. “재정심사”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석은 물론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함
3. “중간검사”란 주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의 위법·부당성이나 부실시공 여부를 중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팅 감사”란 주요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말함
5. “보조금”이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6.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함
7. “집행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함
 - 가. 시 본청
 -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구청
 - 라. 읍·면·동
8. “계약부서”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함.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일상감사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한 예산총액(이하 “예산총액”이라 한다) 30억원 이상
2. 계약업무 : 재정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3. 예산관리업무 : 예산총액 10억원 이상(다만,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한다)
4. 보조금 지원업무 : 교부금액 1억5천만원 이상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한 업무

제4조(재정심사 범위) 재정심사의 대상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포함) :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
2.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3. 건설공사 설계변경(전기, 소방, 통신 포함)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4.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 추정금액 7백만원 이상

제5조(재정심사 대상사업) 재정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 다. 일반용역 : 가목과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제조

제6조(제외사업)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 요청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천재지변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간검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요공정 시행 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의 위법·부당성이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간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업 중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3. 보조금 지원사업 중 공사비 교부금액 1억5천만원 이상

제8조(컨설팅 감사) ①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에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컨설팅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중

간검사를 받은 사업은 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컨설팅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위주 보다 문제 해결 위주의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 요청)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요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관리업무는 예산편성 30일 전에, 보조금 지원업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에 의거 재정심사 요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심사를 요청함에 있어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증액금액이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총 증액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중간감사 및 컨설팅 감사 요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효율성 등 위주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주요정책의 집행, 컨설팅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재정심사를 할 때에는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감사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가. 목표의 정확성(상위 목표와의 부합성, 현실성)

나. 예산 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여부

다. 정책의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여부

라. 행정여건 변화에의 적응여부 등

2. 계약업무(재정심사)

가.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산출

나. 창의적 공법적용

다. 설계변경의 적정성

라.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

3. 예산관리업무

가. 사업의 우선순위(필요성, 시기성, 규모의 적정성 등)

나. 유사·중복된 사업시행 또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심사의 적정성 등

4. 보조금 지원업무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나.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다.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

5.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

가. 사업의 위법·부당성 및 부실시공 여부

나.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

다. 설계공법 채택의 경제성, 효율성 여부 등

⑤ 감사담당관은 제9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① 일상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일상감사와 관련된 기술부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요청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컨설팅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일상감사 업무담당 주사

를 서기로 두며,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감사결과) ①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결과를 집행부서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재정심사 결과를 집행 부서 및 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 및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관련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정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 산정 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결과 심사요청액에 대한 심사평가액이 전년도 심사조정 평균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일상감사의 대상임을 공지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결과 보조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⑦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담당관은 재 감사의 요청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생략)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변경이 없는 한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위법, 부당사항이 면책되지는 아니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일상감사 요청사항 및 감사결과 등은 감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에 철저를 기한다.

②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포항시 재정심사업무처리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이를 폐지한다.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주요정책집행업무 ☐ 예산관리업무		요청부서		
	☐ 보조금 지원업무 ☐ 기타업무				
사 업 명					
예산현황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세출과목					
집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사업개요					
기대효과					

- ※ 첨부서류
-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 2.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 재정심사 요청서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세출과목						
설 계 자	상 호 :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집행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재정심사 요청서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세출과목						
구매 예정일				계약방법		
집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 첨부서류
-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재정심사 요청서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세출과목						
인쇄 예정일			계약방법			
집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
- 1. 규 격 : 질(mm × mm)
 - 2. 수 량 :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 6. 제본종류 :
 - 7. 특수사양 :
 - 8. 기 타 :

- ※ 첨부서류
-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계약) 재정심사 요청서

발 신 : 집행부서의 장

수 신 : 감사담당관

공사(사업)명					요청부서		
공사(사업) 개요	당 초						
	변 경						
공사(사업, 용역) 위 치							
공사 (사업, 용역)비	당 초	총공사비 : 천원(도급비 : , 관급비 :)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변 경	총공사비 : 천원(도급비 : , 관급비 :)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세출과목							
착공(착수)일					준 공 일		
도급자(원설계자)							
업무담당(감독)자		직 : 성명 : 연락처 :					
감 리 자		업체명 : 책임감리자 : 연락처 :					
주변경사유							

※ 첨부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중간검사 [] 컨설팅 감사 요청서

사 업 명			집행부서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금액	· 총공사비: 천원		·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계약방법			계약금액	
사 업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세 부 사업개요				
주요공정 진행현황				
예 상 문 제 점				

- ※ 첨부서류
-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 2.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일상감사결과 통보서

발 신 : 감사담당관

수 신 : 집행부서의 장

□ 건 명 :

주요항목	감사결과 및 의견	비 고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

발 신 : 감사담당관

수 신 : 집행부서의 장, 계약부서의 장

□ 건 명 :

순 번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 고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재정(설계변경)심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발신 : 집행부서의 장

수신 : 감사담당관

□ 건 명 :

순번	심사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소요예산 (천원)			비 고
			당초	조정	증감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제정이유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예산 및 인력 등 행정
낭비 발생요인 최소화, 행정의 시행착오 방지

2. 주요내용

□ 일상감사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예산총액 30억원 이상
- 계약업무(재정심사)
 -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포함) : 1억 5천만원 이상
 -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 용역 : 2천만원 이상
 - 건설공사 설계변경(전기, 소방, 통신 포함) : 5천만원 이상
 -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 7백만원 이상
- 예산관리업무 : 예산총액 20억원 이상
- 보조금 지원업무 : 교부금액 10억원 이상
- 시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중간검사

- 총공사비 10억원(도 계약원가 심사완료사업 포함) 이상
- 보조금 교부금액(공사비) 10억원 이상

□ 컨설팅 감사

- 지적위주보다 문제해결 위주의 도와주는 감사실시
- 집행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로 제한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1-16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3항에 의거 2011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 ◇ 포 항 시 장 - 불임참조
- ◇ 포항시의회의원 - 불임참조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0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시장)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외국인 포함)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402,365		60,355	10개 읍면동 이상에서 읍면 동별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포 항 시	구룡포읍	9,367	1,406		
	연일읍	25,512	3,827		
	오천읍	36,012	4,024		
	대송면	4,785	718		
	동해면	9,764	1,465		
	장기면	4,921	739		
	호미곶면	2,300	345		
	상대동	24,646	3,697		
	해도동	20,557	3,084		
	송도동	15,715	2,358		
	청림동	5,950	893		
	제철동	2,728	410		
	효곡동	21,703	3,256		
	대이동	15,337	2,301		
	흥해읍	28,661	4,024		
	신광면	2,959	444		
	청하면	5,180	777		
	송라면	2,728	410		
	기계면	5,027	755		
	죽장면	2,732	410		
	기북면	1,286	202		
	중앙동	16,848	2,528		
	양학동	15,426	2,314		
	죽도동	19,656	2,949		
	용흥동	21,228	3,185		
	우창동	20,920	3,138		
	두호동	20,306	3,046		
	장량동	31,130	4,024		
	환여동	8,981	1,348		

주민소환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시의원)

지역선거구	읍면동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외국인 포함)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 기준	20/100 산정수	
합계		402,365			
가 선거구	흥해읍	28,661		5,733	
나 선거구	계	19,912		3,983	2개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 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신광면	2,959	200		
	청하면	5,180	200		
	송라면	2,728	200		
	기계면	5,027	200		
	죽장면	2,732	200		
	기북면	1,286	200		
다 선거구	계	36,654		7,331	
	양학동	15,426	367		
	용흥동	21,228	367		
라 선거구	계	56,810		11,362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 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 구권자 총수의 20/100이 상 서명을 받아야 함
	중앙동	16,848	569		
	죽도동	19,656	569		
	두호동	20,306	569		
마 선거구	계	29,901		5,981	
	우창동	20,920	300		
	환여동	8,981	300		
바 선거구	계	31,130		6,226	
	장량동	31,130			
사 선거구	계	24,393		4,879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 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 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 을 받아야 함
	송도동	15,715	244		
	청림동	5,950	244		
	제철동	2,728	244		
아 선거구	계	45,203		9,041	
	상대동	24,646	453		
	해도동	20,557	453		
자 선거구	계	37,040		7,408	
	효곡동	21,703	371		
	대이동	15,337	371		
차 선거구	계	30,297		6,060	
	연일읍	25,512	303		
	대송면	4,785	303		
카 선거구	계	36,012		7,203	
	오천읍	36,012			
타 선거구	계	26,352		5,271	2개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 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 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 명을 받아야 함
	구룡포읍	9,367	264		
	동해면	9,764	264		
	장기면	4,921	264		
	호미곶면	2,300	264		

포항시 공고 제 2011- 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포항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0일

- 다 음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비고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 자	외국인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의 체류 자격 자)	
402,664	402,286	200	178	

포항시 공고 제 2011- 18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 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0일

- 다 음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402,565	402,286	200	79	4,026

포항시 공고 제2011 - 15호

포항시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법인·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월 10일

1. 위탁 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포항시보육정보센터

나. 규 모 : 129㎡ (사무실, 교육실 등)

다. 종사자(예정) : 3명 정도(시설장1, 보육전문요원1, 전산지도원1)

2. 위탁의 기준 및 내용

가. 신청 대상자 자격요건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최근 5년 이내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를 처분을 받은 운영체 제외)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②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 ③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나. 위탁기간 : 3년

다. 위탁내용 : 정보센터 관리와 기능 이행을 위한 제반업무

라. 비용부담 : 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 운영자가 부담하되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

3. 위탁의 절차 및 방법

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 공고기간 : 2011. 1. 10 ~ 1. 23(14일간)
- 2) 신청서 접수
 - ① 접수기간 : 2011. 1. 24 ~ 1. 26(3일간)
 - ② 접수장소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3) 제출서류

- ①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서식)
-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단체인 경우)
- ④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 ⑤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자격증, 학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 ⑥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⑦ 법인·단체 등의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서류 1부
- ⑧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등 위의 순서로 편철하여 20부 제출 -

나. 위탁 운영자 선정

- 1) 선정방법 :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결과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 3) 수탁계약 :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기관(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포항시보육조례, 위탁계약서 등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운영경비 등 공금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보조금

관리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신청자는 심사당일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보센터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및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지정된 기일까지 수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시 수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수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054-270-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④주민등록번호			
센터개요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⑦보육정보센터장의 성명		⑧주 민 등 록 번 호	
⑨ 보육시설 종사자	센 터 장	명	보육전문 요 원	명
	전 산 원	명	영 양 사	명
	간 호 사	명	기 타	명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